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3788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3788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소205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4. 10. 18.

판결 선고 2024. 11. 22.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소205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22. C에게 대여원금 1,000만 원, 변제기 2019. 11. 30., 이율 연 24%(매월 22일 지급)으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1176호로 공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C이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1. 7. 20.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38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법원 E로 동산압류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법원 2022카불100890호로 C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

다. C은 2022. 7. 11. 원고에게 위 경매신청을 미뤄달라고 하면서, 그동안 밀린 이자 등을 포함한 1,200만 원을 이자율 연 20%로 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2022. 8.부터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잔존 연대보증채무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되어 있는 피고의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심법원의 제2회 변론조서에는 '갑 제1호증 차용증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제1심법원에서 위와 같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한 후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4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조서의 해당 기재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위 변론기일에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1심법원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진술을 뒤집고 서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자백의 취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고,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연대보증인란에 되어 있는 피고 서명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착오에 기인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1,200만 원에서 기변제금 300만 원을 뺀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이동욱

판사 박소연

판사 김수연